

도서관법개정법률안

• 본 도서관법 개정안은 문교부에서 위촉한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(3차 회의)를 거쳐 작성한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87.7.5~9.19사이 문교부의 국·실 의견접수, 당정협의(민정당 문공위 1회, 법사위 2회,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과의 협의)와 법제처의 축조심의를 거쳐 확정된 민정당의 도서관법개정 법률안이다. 동 법률안은 국회로 이송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.

1. 제안이유

현행 도서관법은 1963년 10월 28일 제정·공포(법률 제1424호) 된 후 24년이 경과되어 극변하는 현대 정보·산업사회에서 다원화된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, 도서관의 개념을 현대적 의미로 재정립하고 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·공공도서관·대학도서관·학교도서관·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여 각기 그 특성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, 도서관의 육성·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도서관진흥기금의 설치 및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도서관정보협력망의 구성 등 도서관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도서관의 개념을 도서관자료의 수집·정리·보존 및 이용 등 소극적인 기능수행에서,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·정보의 제공과 효율적인 유통,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원적 기능수행의 현대적 도서관개념으로 재정립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나. 도서관의 종류를 전문성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·공공도서관·대학도서관·학교도서관·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각각 구분함(안 제3조).

다. 사서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사서직원의 자격을 1급정사서·2급정사서·준사서로 각각 구분함(안 제7조 제2항).

라.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서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도서관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9조).

마. 정부는 도서관의 설립·시설·운영 기타 도서관 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서관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

바.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의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(안 제15조 및 제16조).

사.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 및 서지정보에 관한 유통의 촉진을 위하여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도록 제도화하고, 그 실시시기는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여건이 조성된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8조 및 부칙).

아.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교육·문화시설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함(안 제22조).

자.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이용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서관 상호간의 조직체로서 도서관정보협력망을 구성하고, 그 협력망의 효율적 운영과 통괄을 위하여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도록 함(안 제41조).

도 서 관 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도서관의 설치·운영과 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·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국민의 평생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도서관”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·조사·연구·학습·교양 등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.
2. “도서관자료(이하 “자료”라 한다)”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축적하는 도서·기록·소책자·연속간행물·악보·지도·사진·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, 영화 필름·슬라이드·음반·마이크로형태물·테이프 등 시청각자료, 전산화자료, 공문서 등 행정자료,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.
3. “공공도서관”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·교양·조사·연구 및 교육·문화활동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.
4. “대학도서관”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(교육대학·사범대학·방송통신대학·개방대학·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의 연구

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.

- 5. “학교도서관”이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(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)에서 교원과 학생의 교수·학습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관실을 말한다.
- 6. “전문도서관”이라 함은 그 설립기관·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.
- 7. “특수도서관”이라 함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·법인 또는 단체가 그 소속원이거나 신체장애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학습·교양·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.

제3조(도서관의 종류)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·공립도서관·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, 그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·공공도서관·대학도서관·학교도서관·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.

제4조(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대한 적용배제)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5조(대학도서관 등의 이용제공) ① 대학도서관·학교도서관·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.

② 대학도서관·학교도서관·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도서관의 시설·자료) ①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.

② 도서관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사서직원 등) ① 도서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·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(사서)를 두어야 하며,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은 1급정사서·2급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하며 그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) ① 각종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상실 또는 오손된 자료를 폐기 혹은 제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도서관발전위원회) ①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서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도서관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도서관진흥기금) ① 정부는 도서관의 설립·시설·운영 기타 도서관진흥에 소요되

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서관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고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출연금
2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

제11조(기금의 운영·관리) ① 기금은 문교부장관이 운용·관리한다.

②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기금조성계획
2. 기금운용계획
3.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문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·직할시·도의 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④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조세감면) ① 법인·단체 및 개인은 도서관의 설립·시설·자료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제1항에 의하여 도서관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.

제13조(유사명칭 사용금지) 이 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
제14조(도서관협회) ① 도서관의 설립자는 도서관 상호간의 정보자료교환 및 업무협조, 도서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연구, 국제도서관단체와의 상호협력, 기타 도서관직원의 자질향상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도서관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 2 장 국립중앙도서관

제15조(국립중앙도서관) ① 문교부장관소속하에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.

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관을 둘 수 있다.

제16조(업무)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국내외자료의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축적 및 공중への 이용
2. 다른 도서관과의 정보자료의 유통
3.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
4.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및 도서관정보협력망의 통괄

- 5.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
- 6. 다른 도서관에 대한 업무 및 사회교육활동의 지도·지원
- 7.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사·연구
- 8. 사서직원의 연수
- 9.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

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③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상호 협력한다.
제17조(자료의 제공 및 납본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·연속간행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도서·연속간행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

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을 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납본의 절차·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국제표준자료번호)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(이하 "자료번호"라 한다)를 부여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3 장 공공도서관

제19조(설립) 국가·지방자치단체·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.

제20조(업무) 공공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자료의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
- 2.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- 3. 강연회·감상회·전시회·독서회 기타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의 주최 또는 장려
- 4.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교류
- 5. 도서관업무에 관한 조사·연구
- 6. 기타 도서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제21조(공공도서관의 설치·육성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 교육과 문화

발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설치·육성하여야 한다.

②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·노인·신체장애자 등을 위한 도서관봉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 또는 이동도서관을 둘 수 있다.

제 22조(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공공도서관(이하 “공립공공도서관”이라 한다)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이를 부담한다.

② 국가는 공공도서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서관의 시설·자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 23조(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) ①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.

② 공립공공도서관의 설립자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③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24조(법인 등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등록)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·군교육장(서울특별시·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제 25조(사립공공도서관의 지도·감독 등) ① 시·군교육장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공도서관(이하 “사립공공도서관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균형있는 도서관발전과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.

② 시·군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26조(시정명령) 시·군 교육장은 사립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그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에 위반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제 27조(정관명령) 시·군교육장은 사립공공도서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을 명할 수 있다.

1. 제6조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

2.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
제 28조(사립공공도서관의 폐관신고) ① 사립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·군교육장에게 폐관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② 시·군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도서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한다.

제 29조(사립공공도서관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립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 30조(사용료·입관료)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국립 공공도서관의 입관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1조(자료의 제공) 지방자치단체가 도서·연속간행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관할지역안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4장 대학도서관

제 32조(설치)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 33조(정관명령) 시·군교육장은 사립공공도서관이 다음 각호의 사립공공도서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을 명할 수 있다.

1.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축적 및 그 이용
2. 효율적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
3. 도서관이용의 체계적 지도
4.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과 정보망을 통한 정보자료의 유통
5. 기타 대학도서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

제 34조(지도·감독) 대학도서관은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당해 대학 또는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제 5장 학교도서관

제 35조(설치) 국민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(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)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 36조(업무)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·축적 및 그 이용
2. 독서지도 및 도서관이용의 지도
3. 시청각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
4. 기타 학교도서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

제 37조(지도·감독) 학교도서관은 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제 6 장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

제 38조(설립등)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·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특정분야별로 전문적인 도서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으며, 특정분야별 자료확보 및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대학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중에서 지정하여 전문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공중이나 신체장애자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·군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제 39조(지도·감독 등) ① 시·군교육장은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균형있는 도서관발전과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.

② 시·군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문교부장관은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40조(준용)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대하여,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.

제 7 장 도서관정보협력망

제 41조(도서관정보협력망 구성) ① 정부는 정보자료의 유통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도서관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각종 도서관의 상호협력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결체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정보협력망(이하 "협력망"이라 한다)을 구성한다.

1. 전산화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
2. 서지관찬·정보처리·봉사활동 및 시설 등의 표준화
3. 분담수서·상호대차·종합목록·인쇄카드제도 등 도서관운영의 효율화
4. 기타 도서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

② 협력망은 각종 도서관으로 구성하고 협력망의 효율적 운영과 통괄을 위하여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, 중앙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된다.

제 42조(중앙관의 업무) 협력망의 중앙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협력망의 각급 지역대표관의 지정 또는 변경
2. 협력망의 기능수행에 관한 기획·조정 및 지도
3. 협력망 운영의 통괄

제 43조(지역대표관) ① 지역대표관은 서울특별시·직할시 및 도에 두되, 공공도서관중에서 중앙관이 이를 지정한다.

② 제1항의 지역대표관은 중앙관의 지도 및 조정을 받아 산하 지역협력망의 운영을 통괄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군·구(서울특별시의 구에 한한다)에 지방대표관을 둘 수 있다.

제 44조(지원·협력) 협력망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종 도서관의 설립자는 당해 도서관에 필요한 시설·체제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각종 도서관은 중앙관 및 지역대표관의 지도에 따라 다른 도서관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.

제 46조(벌금) 제27조(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정관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 47조(과태료) ① 제24조 또는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서관을 개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②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③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자료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④ 제3항의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당해 발행 자료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·교육위원회 또는 '교육장(이하 "관할청"이라 한다)이 부과·징수한다.

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한다.

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